

西紀 1983年 8月 2日 制定施行  
西紀 1984年 9月 28日 改定施行  
西紀 1990年 4月 30日 改定施行  
西紀 1991年 1月 1日 改定施行  
西紀 1993年 6月 2日 改定施行  
西紀 1999年 5月 27日 改定施行  
西紀 1999年 8月 2日 改定施行  
西紀 2002年 8月 8日 改定施行  
西紀 2015年 7月 22日 改定施行  
西紀 2018年 5月 2日 改定施行  
西紀 2020年 9月 17日 改定施行

## 人 事 规 定



仁川廣域市個人택시운송事業組合



## 목 차

###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 제 2 장 , 채 용

제 3 조 (채 용 권)  
제 4 조 (채용방법)  
제 5 조 (수습기간)  
제 6 조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제 7 조 (결격사유)  
제 8 조 (보 직)  
제 9 조 (승 급)  
제 10 조 (승급의 제한)  
제 11 조 (승 진)  
제 12 조 (신분보장)  
제 13 조 (정 년)

### 제 3 장 , 인 사 위 원 회

제 14 조 (인사위원회)  
제 15 조 (구 성)  
제 16 조 (심의사항)  
제 17 조 (해 석)

### 제 4 장 , 부 칙

제 18 조 (시 행 일)

## 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조합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조합에 채용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정하는 것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2 장 , 채 용

### 제 3 조 (채 용 권)

직원의 채용은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 제 4 조 (채용방법)

1. 직원의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력, 경력 및 능력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자질이 인정된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 의하여 특채 할수 있다.
2. 특채의 대상은 과장급 이상 교관, 연구, 통계, 전문요원에 한한다.
3. 신규 직원의 채용은 필기시험 및 면접서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단, 이사장 재량으로 면접서류 심사로 채용할 수 있다.)
4. 임시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 5 조 (수습기간)

직원의 신규 채용은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능력이 있는 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할수 있다.

### 제 6 조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남자직원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라야 한다.
2. 자필이력서(사진첨부, 학력 및 1개월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1부.
3. 주민등록등본 3통.
4.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보증보험증권 1부.(단,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6. 서약서 1부.
7.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8.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제 7 조 (결격사유)**

다음에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회사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자.

### **제 8 조 (보 직)**

직원의 자격, 기능, 경력을 공정히 평가하고 직무상의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이사장이 보직 또는 전보 발령한다.

### **제 9 조 (승 급)**

직원의 승급은 근무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성적과 공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호봉승급을 시행할 수 있다.

### **제 10 조 (승급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결되는 날로부터 다음 기간 동안 승급 할 수 없다.

1. 견책 1회 : 3개월.
2. 감봉 1회 : 6개월.
3. 정직 1회 : 12개월.

### **제 11 조 (승 진)**

직원에 대한 승진은 편제상 결원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정하고 이사장이 발령한다.

### **제 12 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및 조합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 13 조 (정 년)**

1.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2.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1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촉탁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직무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 ①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② 업무의 특성상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근무성적이나 업적이 우수한 자.
3. 조합 운영상 필요에 따라 소정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명예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 3 장 , 인 사 위 원 회

#### 제 14 조 (인사위원회)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직원 징계심의 시에는 상벌위원회로 칭한다.

#### 제 15 조 (구 성)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2. 전 임원.
3. 부장 이하 직원 1명.

#### 제 16 조 (심의사항)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장이상 신규채용 전형.
2. 직원의 복직, 승진, 강등.
3. 기타 중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해 석)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법령과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 4 장 , 부 칙

#### 제 18 조 (시 행 일)

본 규정은 1983년 8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4년 9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0년 4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3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9년 5월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9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7월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9월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